

『iM행복파트너예금(일반형)』요약 상품설명서

■ 기본 정보

최고금리	연2.91%	'25.03.05 현재 (1년제 기준, 비대면우대이자율포함) 최고 우대이자율 연0.40%p 포함 (자세한 우대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)		
가입기간	3개월~3년	월 또는 일단위		
최저가입금액	100만원	최고가입금액	제한없음	
재예치	가능	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		
일부해지	가능	3회(만기해지 포함)까지 가능(단, 신규일 일부해지 불가)		
예금담보대출	가능	납입액의 95%까지 가능		
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		
예금자보호	해당			
		합산) 보호됩니다.		

■ 유의 사항

중도해지이율	기본이자율 × 10% ~ 기본이자율 × 80%	
	원금 × 연이율 × 예치일수/365	
이자계산방식	예금가입금액×약정이율×일수/365 ●	→
	신규일	만기일
예금만기	자동해지 신청 시 → 지정계좌 입금 가능	
	※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능	

※ 본 요약상품설명서는 『iM행복파트너예금(일반형)』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, 반드시 자세한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『IM행복파트너예금(일반형)』상품설명서

- ♣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관리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♣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 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♣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품명: iM행복파트너예금(일반형)

■ 상품특징: 연금 수급 고객 및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이자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구 분	내 용		
가입대상	• 만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(공동명의 가입 불가)		
상품유형	• 정기예금		
거래방법	• 신규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앱뱅킹		
기네이티	• 해지: 영업점, 인터넷뱅킹. 모바일앱병	뱅킹	
가입금액	• 100만원 이상		
계약기간	• 3개월~ 3년(월 또는 일단위)		
가입계좌수	• 제한없음		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		
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		
원금 및	(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		
이자지급제한	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)		
	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•출금•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		
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		
	적용		
	계약기간	이자율	
기본이자율	3개월 이상 6개월 미만	연1.47%	
(단리, 세금납부전)	6개월 이상 1년 미만	연1.87%	
25.03.05현재	1년 이상 2년 미만	연2.46%	
	2년 이상 3년 미만	연2.33%	
	3년	연2.35%	

2 거래 조건(계속)

2 거래 조건(계속)				V OO KT	
구 분	내 용			imbani	
	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자율 적용			율 적용	
	이자율	<u> </u>	H요건		우대
	결정일	1	,, 		이자율
		지난달 당행 계좌를 통한 지 이상을 보유한 고객	아래 연금입금 ′	실적 중 1가	
		- 4대연금(국민연금,공무원)	견금,군인연금,사	학연금) 입금	
		- 당행 가입 연금상품(개인	연금신탁,연금신	[탁,퇴직연금	연0.10%p
우대이자율		개인형IRP,실버주택연금대	배출)의 연금 입금	금	
· · · · · · · · (단리, 세금납부전)	신규	- iM행복파트너예금(연금형) 원리금 입금		
최고 연0.40%p	가입일	(매월 원리금지급 및 이자지급식)			
•		상품 가입 전 당행 신용(체크)카드를 보유(당일발급 포		QIO 100/ m	
		함)한 고객		연0.10%p	
		지난 3개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(보통, 신자유, 기업			
		자유, 가계당좌, 매일플러스) 예금평균잔액이 30만원 연0.10		연0.10%p	
		이상 이거나 당행 수익증권(MMF 제외)을 보유한 고객			
	만기일 이 예금 가입일에 iM행복파! 여 이 예금 만기일까지 보유			시에 가입하	연0.10%p
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				
	70	적용 경과기간		이자율	
	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		약정이자율 x 50%		
	만기후 3개월 미만 경과		약정이자율 x 25%		
	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		약정이자율 x 10%		
만기후이자율			1		
(단리, 세금납부전)					
		약정이자율 X50 %			
		약장	J이자율X25%	약정이자율》	X10%
	만기일	1개월미만 경과 3개	월미만 경과	3개월이상	경과
	※ 약정이자율은 만기시 확정된 이자율 입니다.				

거래 조건(계속)

2

구 분	내 용	imbank		
	•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(이율로 계산한 금액		
	[이자계산 산식] 예금가입금액 \mathbf{x} 약정이율 \mathbf{x} 일수 $/$	365		
만기이자 산출근거	에금가입금액×약정이율×일수/365 ● 신규일	만기일		
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	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		
	이자율 적용			
	•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정기예금	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회전		
	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			
조 드 쉐 티 이 티 오	예치기간	이자율		
중도해지이자율	입금일로부터 20% 미만 경과 시	기본이자율 x 10%		
(단리, 세금납부전)	입금일로부터 20%~40% 미만 경과 시	기본이자율 x 20%		
	입금일로부터 40%~60% 미만 경과 시	기본이자율 x 40%		
	입금일로부터 60%~80% 미만 경과 시	기본이자율 x 60%		
	입금일로부터 80%~100% 미만 경과 시	기본이자율 x 80%		
	※ 만기일 대비 경과기간비율에 따른 기본이자율 비율 적용함			
	•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	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		
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	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원미만 절사)			
		기본이자율X80% 자율X60%		
	기본이자율X10% 기본이자율X20% 기본이자율X40%			
	신규일 20%미만 40%미만 60%미만 80%	6미만 100%미만 만기일		
	※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당시 해당계좌에 적	용된 기본이자율 입니다.		
	※ 위 그림은 적용율, 중도해지개월수, 계약월수 등에 따	다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		
	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(이 아닙니다.		

구 분		내 용	imbank
		ㅏ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로 사망확인서, 입퇴원확인서 등) 제출시 ↔ 율 적용	•
특별중도 해지이자율 (단리, 세금납부전) 25.03.05현재	1.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2. 본인 및 배우자의 3개월 이상 입원 3. 본인 및 배우자의 칠순 또는 팔순 4. 자녀결혼		
25.05.05 단세		예치기간	이자율
	신	L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	연1.87%
	Į.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연1.87%
		신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시	연2.46%
		신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시	연2.33%
예금자보호여부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당 "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	
세제혜택	가능	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!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	
재예치	가능	•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	
부분인출	가능	• 3회(만기해지 포함)까지 가능(중도해 (단, 신규일 부분인출 불가, 최소유지	•
양도 및	71 -	•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김	일권설정 가능
담보제공) 기능	• 담보제공은 계좌잔액의 95% 까지 기	가능
계약해지방법	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[㈜]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㈜휴일: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, 토요일, 근로자의 날 		
휴면예금 및 출연	•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•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		

거래 조건(계속)

2

구 분	내 용
자료열람요구권	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수 있습니다.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권	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류 시 행사 불가)
연계•제휴서비스	해당사항없음

3 유의 사항

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아이엠뱅크

-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- 이 예금은 아이엠뱅크 수신기획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66-5050, 1588-505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imbank.co.kr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/모바일뱅킹에서 가입시 비대면우대이자율(연0.05%p)이 추가 적용되며, 이 비대면우대이자율(연0.05%p)이 추가 적용된 계좌를 중도에 통장 발행 등 일반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체예금기간에 대해 비대면우대이자율(연0.05%p)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,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 후 이자율은 경과기간 별 차등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 시에 지급하며,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
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[부록] 예금 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설 명
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
압류	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
	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71012	▪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
가압류	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	▪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
T1 71 14 T4	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
질권설정 	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/적금, 채권
	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	•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
አ ብ	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
출연	▪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
	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•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
	☞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